

징계처분취소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	사건유형	공무원신분
원고	○○○	피고	인천광역시교육감
판결선고일	2018. 11. 23.	비고	
사건개요	<p>2014. 4.경, 7.경, 9.경 원고가 같은 학교 교사인 소외 ◇◇◇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였고 위 행위에 대하여 소외 ◇◇◇는 인천지방경찰청에 신고를 하였음. 2015. 2.5.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은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소외 ◇◇◇는 이에 불복하고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음. 2015. 7. 16. 소외 ◇◇◇는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6. 5. 25.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의 진정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의 징계를 권고하였음.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4. 7. 원고에게 '감봉 3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p>		
주 문	<p>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p>		
청구취지	<p>1. 피고가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p>		
판결이유	<p>○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인정 - (성희롱 행위 인정)이 사건 행위는 학교 직원들의 회식에 밀접하게 이루어졌고,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공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 (처분의 처분사유 인정)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이 정한 성희롱 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됨.</p> <p>○ 재량권의 일탈·남용 부존재 - (징계양정)원고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급이 낮은 교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희롱 행위를 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 - (재량권의 일탈·남용 부존재)따라서, ①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② 이러한 징계기준이 균형을 잃어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p>		
결 론	<p>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p>		